

경영관리위원회규정

주식회사 HJ중공업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경영관리위원회(이하 "경관위"라 함)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권한 및 기능]

경관위는 이사회 결의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, 이사회 결의로써 그 결정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.

제3조 [구성]

- ① 경관위의 위원(이하 "위원"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경관위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사외 이사로 한다.

제4조 [위원장]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.
- ② 전항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사장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[감사의 출석 등]

- ① 감사위원은 경관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② 감사위원은 경관위 위원이 법령, 정관 및 관계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 [개최]

경관위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의 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[소집권자]

경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.

제8조 [결의방법]

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제9조 [관계인의 의견청취]

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집행간부 또는 외부인사를 경관위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 [통지/보고의무]

경관위는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 및 결과를 회일 후 1주 이내에 각 이사회에게 통지하고, 필요한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 [준용규정]

경관위 소집절차 및 의사록, 간사에 대한 사항은 관련 이사회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 [시행일]

1.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